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항소 결정 번호 에 따른 고용주의 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록 증거 및 적시에 제출된 모든 요약문 또는 서면 주장이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고용안전부("Division") 판결유닛은 일, 항소 & 청문회 : 레벨 1 - 초기 결정에 대한 항소 팜플렛을 판결서류번호의 사본과 함께 각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팜플렛 6 번 및 7 번 패널에서 알코올 및/또는 규제 물질/약물 검사의 결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음을 고용주가 알게끔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팜플렛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N.C. Gen. Stat. 95 §§ 230-235 의 규제 약물 검사 규정법(CSERA)는 검사가 미국 교통부 또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한, 검사가 그 검사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용인이 규제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음; (2) 약물 검사 샘플에 대한 연계 보관성; (3) 규제 약물 검사의 신뢰성; 그리고 (4)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위반하였는가. 청문회에서 실험실 대리인의 실제 증언 대신 실험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선서 진술서를 사용하여 규제 약물 검사 결과, 연계 보관성 및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검사 및 재 검사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규제 약물 검사의 양성 반응은 고용주가 CSERA 의 준수를 보여주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로 해당됩니다. 유사하게, 피고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시행된 약물 검사 정책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면 역시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규제 약물 검사 결과 및 법정 또는 규제 절차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는 원고가 청문회 중 또는 진술서를 통해 인정하거나 규정한 경우 입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N.C. Gen. Stat. § 96-14.6 and 04 N.C. Admin. Code 24C .0211. 를 참조하십시오.

고위당국결정번호



고용주는 그 항소에서, 어떠한 증언 및/

또는 맹세하에 제공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케이스에서 항소심판앞에 개최된 증거 청문회에서 적절한 교차 조사를 받을 만한 대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문회 이전에, 본부 항소 섹션은 청문회 공지별지번호를 04 N.C. Admin. Code 24C .0204 에 의거하여 항소심판의 파일에 포함된 서류들 사본과 함께 각 당사자에게 우편 발송 하였습니다. 해당 통지 및 동반된 서류들은 일에 각 당사자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 하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맹세한 증언이 요구됩니다. 귀하가 증인들이 증언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청문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귀하가 청문회 담당자가 고려하기를 원하는 문서, 전자 녹취록, 또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담당자 및 각 당사자에게 우편 발송 또는 전달해야 합니다. 증거는 청문회 이전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N.C. Gen. Stat. §§ 95-230 부터 235 및 04 N.C. Admin. Code 24C .0211 에 의거하여, 해당 통지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알코올 및 규제 물질/약물 검사를 포함한 퇴직에 대한 증거 요구 사항에 대해 알렸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 하였습니다:

약물 및/또는 알코올 관련 퇴직 :  
검사 및 결과를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에는 근로 규칙 및/또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규제 약물 검사 규정 N.C.G.S. 95-230 - 235 는 검사가 미국 교통부 또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한, 검사가 그 검사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실험실 대리인의 실제 증언 대신 실험실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선서 진술서를 사용하여 규제 약물 검사 결과, 연계 보관성 및/또는 연방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적용 가능한 검사 및 재검사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문회에서 또는 진술서를 통해 인정하거나 규정한 경우 검사 결과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담당자에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청문회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수석 항소심판에게 연락하십시오.

앞서 언급된 서면 통지에 따르면 고용주는 모든 증언 및 기타 증거 제시를 위해 증거 청문회에 참석할 의무에 대해 알려졌음이 분명합니다. 고용주는 실제 증언이나 규제 약물 결과, 연계 보관성, 및 검사 및 재검사 절차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의 진술서를 포함하는 적합한 증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에 대해 통지 받았습니. 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7 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로 증언 또는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청문회의 재 조정을 요청하지 못하게끔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실사를 실시할 때에 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N.C. Gen. Stat. § 96-15(d1) 및 04 N.C. Admin. Code 24A .0105(26)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상에 중요한 사안에 관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원고가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고용주에게 한번 이상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적법 절차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주는 피고 용자가 실업급여 혜택에 자격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반복해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Dunlap v. Clarke Checks, Inc., 92 N.C.App. 581, 375 S.E.2d 171 (1989) 를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위원회는 고용주가 절차적 정당한 절차를 부여받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증언이나 기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모든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Douglas v. J.C. Penney Co., 67 N.C. App. 344, 313 S.E.2d 176 (1984) 를 참조하십시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증거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Patrick v. Cone Mills Corp., 64 N.C.App. 722, 308 S.E.2d 476 (1983) 를 참조하십시오.

실업 보험 혜택을 위한 분쟁 클레임을 포함한 케이스에 대한 궁극적 사실 발견자로서 위원회는 항소 심판이 발견한 사실이 적절한 증거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것으로 적용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또한 항소 심판이 발견된 사실에 고용 안전법 (N.C. Gen. Stat. § 96-1 이하 참조)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결과적 결정은 법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 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하여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 부터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가 위원회 위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

위원장

**주의:** 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http://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4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